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9648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9648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0. 24 선고 2002나2018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AA(담당변호사 BA학원외 3인)

【피고, 상고인】 조CA(소송대리인 변호사 박BB)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10.24. 선고 2002나201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장DA가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30,000,000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이 사건 각서에 “입회인 : 1. 이NN, 2. 피고”, “장DA 각서 내용에 대하여 위약 시에는 입회인이 보증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입회인인 이NN과 피고가 위 각서에 기재된 자신들의 이름 옆에 각자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와 이NN은 보증의 의사 없이 문자 그대로 입회인으로서 위 각서에 서명하였을 뿐이고 위 각서에 기재된 보증문구는 피고와 이NN의 서명 후에 장DA가 가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작성명의인이 그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그 문서의 특정 부분이 가필 등으로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는 위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장DA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그 문서에 일부 내용이 추가 기재되거나 수정됨으로 인하여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변조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3204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장DA가 ‘한국고미술연구소’라는 상호로 골동품판매상을 운영하는 상인이라는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법 제47조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2항), 상인인 장DA가 원고로부터 골동품 구입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을 약속한 이 사건 주채무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 할 것이고,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상법 제57조 제2항).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을 연대보증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행위 또는 보증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